

방재와 보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사용되는 용어의 전문성으로 인하여 생소한 분야로 느껴지는 예가 많다. 그래서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재와 보험에 관한 전문용어를 해설, 소개한다. <편집자주>



방재용어

● 폭발등급(explosion class)

폭발성 가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내용적 8,000cm³, 半球部의 플랜지 접합면의 좁은 틈의 깊이가 25mm인 球狀容器를 사용하여 그 좁은 틈의 값을 변화시켜 측정된 화염일주한계치-즉 폭발성가스의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등급을 말한다. 등급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위험도는 1, 2, 3의 순으로 높아진다.

● 화염일주(flame propagation)

폭발성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을 일으켰을 때 생기는 화염이 용기 접합면의 좁은 틈을 통하여 주변의 위험분위기에 접화되는 것을 말한다. 火災逸走를 방지하기 위해 접합면에서의 좁은 틈의 깊이의 일정치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좁은 틈의 크기의 최대 허용 한계치가 있는데 이것을 화염일주한계치라고 한다.

● 注水量

일반 목조 또는 방화건축물 화재에 사용되는 이론상의 수량은 1m²당 10~15 l로 되어 있다.

이것은 목재의 연소시 생성하는 발열량을 주수하여 발화온도 이하로 떨어뜨리는데 필요한 수량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량으로 행하는 소화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화재 현장에서는 이것의 몇배나 되는 물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 습도

공기속의 습기의 정도를 말하며 절대습도와 상대습도가 있다.

절대습도란 1m³의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상대습도란 공기중에 함유될 수 있는 수증기의 최대량(포화수증기량)과 실제로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과의 비를 말하며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이외에 과거 몇십일 동안의 상대습도가 어떻게 변

화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시방법으로 실효습도가 있으며 板, 기둥, 가구 등 목재의 함유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위 목재등이 불붙기 쉽다는 것을 표시하는 습도라고 말할 수 있다.

출화조건에는 습도가, 대화재시에는 실효습도가 좋은 척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효습도가 50%이하이거나 당일의 최소습도가 30%이하일때 건조주의보가 발효되고 있다.

● 인화점(flash point)

인화점이란 가연성 액체 또는 고체가 공기중에서 그 표면 가까이에서 인화하는데 충분한 농도의 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말한다.

따라서 가연성 액체 또는 고체를 개방된 용기에 넣고 그 액체의 온도를 점차 올리면 증기가 발생하며 그 증기와 공기와의 혼합가스가 생긴다.

즉 가연성 액체는 그 온도에 상당하는 일정한 증기압이 있으므로 액면 부근에서는 증기압에 상당하는 농도가 된다.

이때 증기의 온도가 연소한계에 달하고 착화원이 있으면 액면에서 연소가 시작되며, 이때 그 온도의 최저온도를 인화온도(인화점)라 한다.

● 산화반응(oxidation reaction)

불에서의 산화반응은 발열반응으로써 반응생성물의 하나가 열이다. 산화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과 산화제가 있어야 한다. 완전한 산화상태에 이르지 않은 것은 모두 연료가 될 수 있다. 산화제로 가장 흔한 것은 공기중의 산소라 할 수 있다.(공기중에는 부피비로 산소가 약 20%, 질소가 약 80% 들어 있음). KClO₃, NaNO₃와 같이 어떤 조건하에서 산소를 방출할 수 있는것도 산화제가 된다. pyroxyline plastic(셀룰로이드)과 같이 자체내에 연소에 참여할 수 있는 산소가 들어있어 외부로부터 산소의 공급 없이도 일부는 연소할 수 있는 것도 있다. [W]



보험용어

• 손해방지의무(duty to sue and labour)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이 의무를 과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의 기반인 신의, 성실 원칙의 요청에 따르는 것으로서 공익보험의 견지에서도 요청된다.

손해방지의무는 손해방지의무자가 보험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것을 전제로 하며 보험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보험사고 그 자체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보험사고 발생의 방지를 부당하게 태만히 한 때는 경우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고의 초래가 되기 때문에 보험자의 면책을 가져올 수도 있다.

• 현물보상(reinstatement, replacement)

화재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자가 금전이 아니고 현물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재축, 수선, 현품의 교부 등이 있으나 모두 신·구교환에 의한 감가의 공제가 필요하며 신품의 취득에 의한 이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위(subrogation)

손해를 배상한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취득하게 된다.

상법은 손해보험에 관하여 보험대위를 인정하고 있다.

• 잔존물

화재에 의해 전손이 생겼을 경우의 연소물을 일괄하여 잔존물이라 한다.

이의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각기 약관에 독자의 조항을 명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잔존물을 보험회사가 인수할 때는 손해액을 소정 계산에 의해 전액 보상하고 피보험자가 인수할 때는 이를 평가하여 보상할 금액에서 그만큼 공제한다.

• 잔존보험금액

일부손해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보험금액에서 지급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금액이라 하며 주로 화재, 자동차 도난 등 육상보험에 적용된다.

현행의 화재, 도난 보험 등과 같이 잔존보험금액이 보험금액의 일정비율 이하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업경영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을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유력한 수단이 보험이며 그밖에 자가보험, 재해의 예방, 재해발생의 경우의 조치도 위험관리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원수보험(original insurance)

어떤 특정한 보험계약에 있어 재보험계약이 체결될 때에 재보험계약에 대하여 원수보험이라고 하며 다른 경우에는 재보험이 아닌 보험을 지칭하기도 한다.

• 보험사고(risk covered, insurable risk or contingency)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우연적인 일정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바, 계약상 보험자의 보상의무를 구체화한 사고를 말한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있어야 하며 사고발생의 여부나 정도는 불확실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